

WTO에서의 국내 보조금 운용의 시사점*

송 주 호

2001년부터 시작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서는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이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UR과 DDA에서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이행하는지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1. DDA에서의 국내 보조금 분류

보조금의 분류

국내 보조금은 허용 보조금, 감축약속에서 면제되는 보조금(de-minimis, 블루박스), 감축해야 하는 보조금(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으로 대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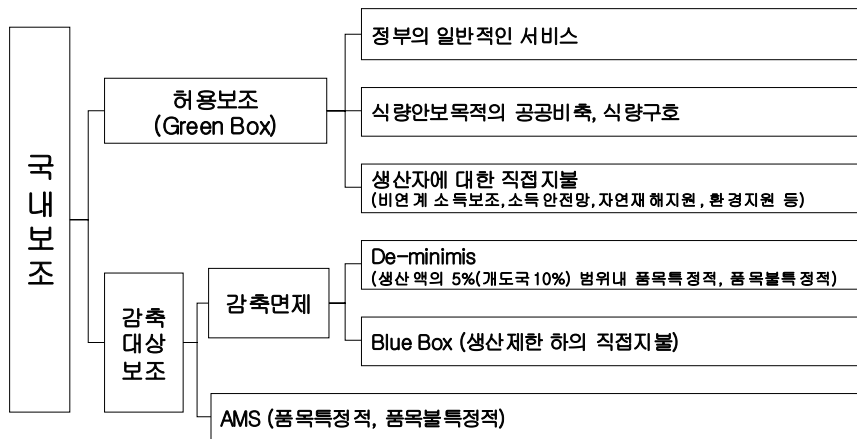
DDA에서는 기본적으로 UR 농업협정의 보조금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국내 보조금은 허용보조금, 감축약속에서 면제되는 보조금(de-minimis, 블루박스), 감축해야 하는 보조금(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으로 대별할 수 있다.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1)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해야 하며, 2)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

AMS(보조총액측정치)계산은 시장가격지지금액과 감축면제되지 않는 직접지불금액의 합계이며, 시장가격지지 = (국내 관리가격 - 국제가격) × 적용물량으로서 실제 재정지출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 본 내용은 WTO에서의 보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jhsong@krei.re.kr, 02-3299-4187)

허용보조 중에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1) 비연계소득보조, 2) 소득보험 또는 소득안전망계획에 대한 지원, 3)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지불, 4)탈농 구조조정지원, 5) 자원폐기 구조조정지원, 6)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7)환경계획 지불, 8) 지역지원 지불로 나누어진다.

그림 1 UR에서의 국내보조의 종류



DDA에서의 국내보조금

DDA에서 UR과 달라진 내용은 무역왜곡보조총액을 신설하고, 보조총액측정치(AMS)에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고, 블루박스(BB: Blue Box)의 유형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은 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합한 금액이며, 개별 보조금 감축과는 별도로 OTDS도 삭감해야 한다. AMS는 전체 한도를 삭감해야 하며 품목별로도 한도를 정해 품목 간 전환가능성을 제약하였다. 블루박스의 유형을 한가지 더 신설(생산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고정된 면적, 혹은 사육두수를 대상으로 가격과 연계하여 지급 가능)하여 미국의 CCP 제도를 블루박스로 분류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DDA에서는 허용보조 이외의 보조금은 UR보다 한도를 줄이거나 대폭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DDA에서 UR과 달라진 내용은 무역 왜곡보조총액을 신설하고, 보조총액 측정치(AMS)에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고, 블루박스의 유형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1 UR과 DDA의 보조금 유형별 한도 및 감축율 비교

구 분	선진국		개도국	
	UR	DDA	UR	DDA
AMS 감축율	20%	45~70%	13.3%	30%
de-minimis 한도	생산액의 5%	생산액의 2.5%	생산액의 10%	생산액의 6.7%
블루박스 한도	사용실적	생산액의 2.5%	사용실적	생산액의 5%
OTDS 감축율	-	55~80%	-	36.7%

2. UR과 DDA에서의 주요국 보조금 안도 비교

선진국에 유리했던 UR 국내 보조금 안도

주요국의 농업생산액 대비 AMS 양허 한도 설정비율을 살펴보면 EU와 일본은 매우 높고 미국은 중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UR 당시 국내보조금 한도설정은 선진국에 매우 유리하였다. 주요국의 농업생산액 대비 AMS 양허 한도 설정비율을 살펴보면 EU와 일본은 매우 높고 미국은 중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UR에서 1986~88년도의 보조금 지급실적을 감축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농업부문에 막대한 보조를 지급¹⁾하던 선진국들은 유리하지만 우리나라 등 개도국들은 당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아직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전체한도(ceiling)가 불리했다고 볼 수 있다. UR 이행 초년도인 1995년도를 보면, EU는 농업생산액의 37.9%를 AMS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본은 45.9%, 미국은 12.1%, 우리나라는 8.2%에 불과하였다.

표 2 국가별 감축대상보조금 한도 및 실적(1995년)

구분	미국 (백만 달러)	EU(95/96) (백만 유로)	일본 (10억 엔)	한국 (억 원)
농업총생산액(A)	190,110	207,400	10,450	267,361
AMS양허한도(B)	23,083	78,672	4,801	21,826
현행AMS	6,214	47,526	3,508	20,755
최소허용보조	1,487	623	37	2,822
블루박스	7,030	20,846	0	0
B/A(%)	12.1	37.9	45.9	8.2

2004년도에는 농업생산액 대비 AMS상한이 EU는 25.1%, 일본은 45.2%, 미국은 8.2%, 우리나라는 4.0%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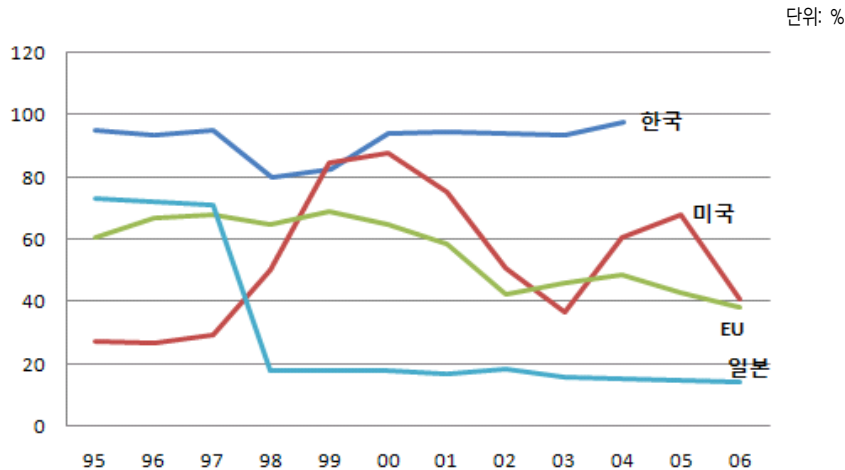
표 3 국가별 감축대상보조금 한도 및 실적(2004년)

구분	미국 (백만 달러)	EU (백만 유로)	일본 (10억 엔)	한국 (억 원)
농업총생산액(A)	234,094	267,388	8,786	372,886
AMS양허한도(B)	19,103	67,159	3,973	14,900
현행AMS	11,629	30,880	608	14,584
최소허용보조	6,458	1,953	41	5,388
블루박스	0	24,782	68	0
B/A(%)	8.2	25.1	45.2	4.0

1) 미국과 EU는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AMS 감축기준에 포함하되 현행 AMS 계산에서는 제외하기로 합의(1992. 블레이 하우스 합의) 함으로써 AMS 양허 한도가 높아지고 현행 AMS 소진율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쌀에 대해 생산량 전량을 대상물량으로 하여 AMS 한도를 높인 기술적인 이유도 있음.

결과적으로 AMS 소진율도 통보기간 평균 EU는 60%, 일본은 30%, 미국은 5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2%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AMS 한도가 실질적인 보조금 제약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양정개혁을 통해 쌀에 대해 변동직불제가 신설되어 2005년부터 AMS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주요국의 연도별 AMS 소진율 비교



DDA에서는 국내 보조금 영평성이 개선될 전망

DDA에서는 보조금이 많은 국가가 더 높게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OTDS 비율은 미국이나 EU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AMS 한도 비율도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많이 감소되었다.

또한 DDA 협상에서는 AMS와 BB의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UR 이행기간 중 통보한 금액의 평균이 상한인데 비해, 개도국은 평균 통보액 이외에도 품목별 생산액의 20%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 신규 품목에 AMS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이 높아졌다.

DDA에서는 보조금이 많은 국가가 더 높게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DDA에서의 주요국 OTDS, AMS 한도 비교

구 분	감축률 (%)		농업생산액(A)	이행연도말 한도		비율 (%)	
	OTDS	AMS		OTDS(B)	AMS(C)	B/A	C/A
EU	80	70	2,674억 유로	220억	201억	8.2	7.5
미국	70	60	2,341억 달러	145억	76억	6.2	3.3
일본	70	70	8조 7860억 엔	1조 6,340억	1조1,920	18.6	13.6
한국(개도국)	36.7	30	37조 2,886억 원	6조 602억	1조 430	16.3	2.8

주: 농업생산액은 2004년도 기준임(EU는 2003/4년도).

3. 외국의 WTO 국내 보조금 운용의 시사점

생산과 무역에 대한 왜곡이 적은 정책으로의 전환

WTO와 OECD에서는 가격지지정책이 무역 왜곡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하며 생산 중립적(decoupled)인 직접지불제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WTO와 OECD에서는 가격지지정책이 무역 왜곡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하며 생산 중립적(decoupled)인 직접지불제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OECD는 PSE 계산 시 생산과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농업정책을 분류하고 있는데 산출량(output)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격지지정책, 투입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 생산을 요구하면서 현행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 과거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불 순으로 왜곡정도가 약해진다고 분류하고 있다.(OECD 2008)

최근 선진국들은 여러 품목별 직접지불제도를 통합하여 농가 단위로 하나의 직접지불제로 운용하면서 품목 특장적인 성격을 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캐나다의 CAIS제도, EU의 단일 농가직불(Single Payment Scheme)제도,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EU의 단일 농가직불제도,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 생산조건 격차 개선대책의 직접지불금은 허용보조인 생산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농림부, 2007. 11)에서는 직접지불제를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¹⁾로 흡수하고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FTA 소득보전직불제도도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대체해 나간다는 농정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은 가격변동이 생산량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농가의 수입안정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에는 농가의 조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은 가격변동이 생산량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농가의 수입안정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에는 농가의 조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캐나다의 CAIS제도, 미국의 ACRE제도,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 수입변동완화대책 등은 가격이 아니라 농가의 조수입을 보장한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대책의 피해보전직불제에서는 가격기준이 아닌 조수입기준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 1)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재 등(2006) 참조. 농림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일정연령 미만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때 그 격차의 일부(예: 80%)를 보전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음(농림부 2007. 11).
- 2)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4년 옥수수 풍년으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농가 수입은 줄지 않았는데도 CCP가 지급되었으며, 반대로 2005년도에는 가뭄으로 옥수수 수확이 줄어 가격이 올랐으나 농가수입은 줄었는데도 CCP는 지급되지 않았음(Babcock et.al. 2005).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 확대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는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선진국은 5%, 개도국은 10%까지는 최소허용보조로 인정받아 AMS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CCP는 품목 불특정 AMS로 분류하여 DM으로 현행 AMS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고 캐나다의 CAIS도 30% 미만의 손실에 대한 보조는 품목 불특정보조로 통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비율이 낮으므로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가 도입되어 30% 미만의 손실도 보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 형태의 전환 가능성

미국은 블루박스로 통보되던 부족불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1996년에 폐지하고,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허용보조인 생산탄력계약지불제도(Production Flexibility Payment)로 전환하였다. 2002년에 도입된 CCP는 목표가격이 있기 때문에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하였으나 DDA에서는 다시 블루박스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블루박스인 직접지불제도를 허용보조인 단일농가지불제도(SPS)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8년에 AMS인 쌀 수매제도를 블루박스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AMS에 산입되던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고정직불은 허용보조로 변동직불은 품목특정 AMS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DDA에서는 품목특정 AMS인 쌀 변동직불을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방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의 AMS를 BB로 전환하면 i) 전체 AMS에 여유가 생겨 다른 품목에도 AMS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ii) 쌀에 대한 품목특정 BB한도도 커지므로 운용상 여유가 생기는 이점이 있다. AMS 전체한도는 개도국의 경우 이행초년도 1조 4,900억 원에서 이행연도 말에는 1조 43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쌀 AMS를 BB로 전환하면 쌀의 품목 BB한도는 선진국의 경우 1조 7,451억 원, 개도국의 경우 1조 8,675억 원이 한도가 되고 AMS전체를 다른 품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

2004년 양정개혁으로 쌀의 AMS계산방법이 시장가격지지(국내외 가격차에 적용 물량을 곱한 금액)에서 비면제 직접지불(변동직불금)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쌀의 AMS 계산은 수확기 쌀 값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 수확기 쌀 값이 14.3% 하락하여 변동직불제로만 9,007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쌀값이 회복되어 변동직불금은 DM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는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선진국은 5%, 개도국은 10%까지는 최소허용보조로 인정받아 AMS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DDA에서 품목특정 AMS인 쌀 변동직불을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방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 쌀 소득보전직불제 연도별 집행 실적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p)
논면적 (천ha)		1,115	1,105	1,084	1,070	
고정 직불	대상면적(천 ha)	1,007	1,024	1,017	1,016.5	1,012.5
	지급단가(천원/ha)	600	700	700	700	700
	지급단가(원/80kg)	9,836	11,475	11,475	11,475	11,475
	집행(백만원)	607,024	718,397	712,004	-	-
변동 직불	지급면적(천 ha)	138	940	951	945	943
	수확기 쌀값(원/80kg)	161,630 (04년산)	140,028 (05년산)	147,715 (06년산)	150,810 (07년산)	162,307
	지급액(원/80kg)		14,071	7,537	4,907	0
	집행(백만원)	2,916	900,669	437,038	279,161	0

자료: 이정환 외(2009) 를 업데이트 함.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지원한다. 고정직불금은 쌀값에 상관없이 2005년산에 대해서는 ha당 60만원, 이후 ha당 70만원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총직접지불금 $\{=(\text{목표가격}-\text{수확기 산지 쌀 값})\times 0.85\}$ 이 고정직불금을 상회할 경우 차액으로 지원되며 산지 쌀 값이 크게 상승하여 총직접지불금이 고정직불금보다 작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대상농지는 1998~2000년도 기간 동안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이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블루박스가 되기 위한 조건(기준생산량의 85% 이내에만 지급)은 현 제도를 약간만 수정하면 농가에 미치는 큰 영향없이 준수 가능하다. 현재 변동직불금 지급단가가 대상면적의 100%에 대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가격과의 차액의 85%를 지급하므로 이 조건을 대상면적의 85%에 차액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면 정부의 지출액은 별로 달라지지 않게 된다. 다만, 쌀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 부과되면 쌀 재배면적이 달라지고 생산량이 변화하여 실제 지출액과 농가수입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AMS에서 BB로 전환한다면 i)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ii) 현재의 고정형직불제처럼 쌀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신규 BB로 운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쌀 생산이 과잉인 상황 하에서는 생산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제한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며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를 도입하면 쌀 생산이 줄어들 수 있으며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식량안보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8년도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금년에 제도의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제도의 빈번한 변경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AMS에서 BB로 전환한다면 i)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ii) 현재의 고정형직불제처럼 쌀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신규 BB로 운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블루박스가 과도기적인 보조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이 블루박스를 만드는 것은 한시적인 조치이며, 변동직불금의 한도 초과여부가 우려된다면 고정직불금을 높이고 변동직불금의 발생 가능성 및 금액을 낮추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고정직불금 비중을 높이면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가 소득이 목표수준을 초과해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고정직불금 수준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WTO 허용보조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DDA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최소허용보조는 생산액의 6.7%이므로 쌀 생산액이 6조원이라면 4,020억까지는 DM이 되어 현행 AMS 계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쌀 값이 148,000원/80kg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쌀 변동직불금은 DM 이하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9 농업전망에서는 장기적으로 쌀값이 13만원 이하로 하락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면 국민정서상 받아 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쌀 AMS의 블루박스로의 전환은 DDA 이행과정에서도 가능하므로 전환시키는 쌀 값의 장기 전망과 다른 품목에 대한 AMS 지급 전망, 그리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품목 분류 범위

DDA에서는 품목의 분류 범위 문제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DDA 모델리티에서는 이행계획서에 품목특정적 AMS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품목을 어느 정도 세분화할 것인가 검토하여야 한다. EU는 2003/04년에 56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 포함)하였는데, Common wheat, Durum wheat 그리고 버터, 탈지분유, 우유 등으로 품목을 세분화하여 세부품목별 AMS와 생산액을 통보하였고 일부 품목(가공용 포도 등)에 대해서는 생산액을 통보하지 않으면서(n.a.로 표기) 현행 AMS에 산입하였다. 미국은 2005년에 23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포함)하였는데 낙농, 가축, 과수원과 포도원(orchard and vineyard)을 각각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일본은 2006년에 13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포함)하였는데 채소, 과일을 각각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25개 품목특정적 AMS를 통보하였는데, 보리와 맥주보리는 나누었고 기타 곡물, 기타 채소, 기타 과일, 약용작물, 임산물, 화훼류 등으로 대분류하였다. DDA에서는 현재 품목특정 AMS에 산입되는 품목은 그대로 표기하면 되며 향후 보조금 지급 계획이 있는 품목은 별도 품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향후 계획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동일 부류의 품목과 통합하여 대분류하면 융통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이번 DDA 모델리티에서는 이행계획서에 품목특정적 AMS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품목을 어느 정도 세분화할 것인가 검토하여야 한다.

4. DDA 국내보조 모델리티의 시사점

2008년 12월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제시된 국내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허용보조금과 관련하여 개도국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조항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2008년 12월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제시된 국내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허용보조금과 관련하여 개도국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조항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DDA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지원할 경우에는 손실이 직전 5년간 혹은 올림픽 평균의 30% 미만인 경우도 허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인수범위를 80%로 한 경우도 허용보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혹은 국내식량구호 목적의 경우에는 저소득/자원 빈곤생산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사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격 차이를 AMS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활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농림부 2007.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2007. 11
- 박성재, 오내원, 김태곤, 박준기, 정호근, 문한필, 조용원, 김석현. 2006.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연구」. C2006-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김재훈. 2009. 「잇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시선집중. GS&J_제 71호(2009.01.0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2009농업전망」
- Babcock, B.A. and C.E. Hart. 2005. "Safety Net Design for the New Farm Bill." Iowa Ag Review Center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Vol 11. No.3.
- OECD 2008. OECD's Producer Support Estimate and Related Indicators of Agricultural Support Concepts, Calculations, Interpretation and Use (The PSE manual)
- WTO,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2,3
- 한국의 국내보조금 WTO 통보문서, G/AG/N/KOR/7, 10, 14, 18, 24, 31, 37
- 미국의 WTO 통보문서 G/AG/N/USA/5, 17, 27, 36, 43, 51, 60
- EU의 WTO 통보문서 G/AG/N/EEC/12, 16, 26, 30, 38,49,51, 53
- 일본의 WTO 통보문서 G/AG/N/JPN/ 21, 34, 47, 61, 72, 98, 108, 124, 129, 132, 137